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3157

집회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피진정인 성남수정경찰서장

주 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장이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2008. 7. 31. 17:00경 성남수정경찰서에 부시방한 반대규탄집회를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서울공항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진정인들이 불법집회 시위 전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해 8. 2. 집회장소를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진정인들은 같은날 14:15경 첫번째

집회신고와 동일한 내용이나 집회장소를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 공항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하여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같은달 4일 10:30경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장소가 경찰'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회 금지 통고를 하였고 두번째 집회금지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여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권고하여 진정인들은 2008. 8. 5. 16:40-17:30경 위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경찰들이 미신고 집회참가 등을 이유로 해산을 하라고 경고하고 진정인들을 연행하였는데, 두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평통사'는 2004. - 2008. 3 동안 9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 및 미군훈련 방해 기습시위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철수 등 반미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집회 당일 부시 미대통령 방한이 예정되어 있었고 외신 기자 취재 경쟁 등 당일 상황, 집회장소 주변여건, 집회목적에 비취 불순물 투척, 이동방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집회금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2) 또한 신고 장소는 이미 '성남 고등동마을회'에서 2008. 7. 12. - 8. 8.간 서울 공항 앞 주변로(행진)에 '국지도 23호선 확장공사 소음분진 보상촉구 결의대회'가 신고 되어 있었으며 양 단체의 집회목적, 당일 국민방문 환영인과 집결 등으로 보아 상호집회 방해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3) 집회장소는 군사시설(공군제15 혼성비행단, 미52항공대) 주변지역으로 시설 주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던 데다가, 군작전 차량이 집회장소 앞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점, 그 장소 또한 공항과 근거리로 기습적인 군 시설 진입기도·불순물 투척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군 시설에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도 충분하다.

4) '평통사'의 첫 번째 집회신고와 두 번째 집회신고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통보하였으며 전달 방법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평통사' 사무실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이의 신청 등)후 교부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2008. 7. 31. 17:00경 성남수정경찰서에 '부시방한 반대 규탄 집회' (개최일시: 2008. 8. 5. 일출 - 일몰, 개최장소: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정문앞)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서울공항 측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평통사'는 같은해 3. 8.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 앞에서 한미합동 군사 훈련 중단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등 4회에 걸쳐 불법집회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들은 2008. 8. 2. 14:15경 첫 번째 신고 집회와 내용은 동일하고 장

소는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같은달 4일 첫 번째 금지통고와 동일한 내용에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행진포함)를 하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다. 2008. 8. 4.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접수번호 제286호로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2008. 8. 2. 권고하였으나 성남수정경찰서가 불수용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첫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장소경합”과 관련하여 신고된 두 개의 집회의 경우 근거규정인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부시방한 반대집회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보상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집회 금지통고 사유의 명확한 적시가 없어 위 조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하므로 적어도 인접한 공터나 도로가 되어야 하는바, 진정인이 두 번째 신고한 집회장소는 서울공항의 맞은편 도로로 담장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세 번째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시점을 기준으로 되어야 하고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이를 이유로 위의 명백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라.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두 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집시법」 제5조 및 제8조의 집회금지 통고조항을 진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1>

관 련 규 정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지역 등의 범위)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별지1>

진정인: 1. 홍근수

2. 문홍주

3. 이진희

4. 김정택

5. 오동환

6. 이병갑

7. 김은숙

8. 한지원

9. 유한경

10. 김현숙

11. 이관복

12. 현호현

13. 심자섭

14. 공동길

15. 황윤미

16. 변연식

17. 정혜열

18. 유호명

19. 신재훈

20. 유명재

21. 김미희

22. 김미라